
「저출생 대책」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

2025. 3. 11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 . 그간의 정책대응 1

II . 부처별 주요과제 추진계획 4

III . 추가 보완과제 7

I. 그간의 정책대응

◇ 「**정책적 대응**」(총 183개 과제 발표*)과 「**사회인식 변화**」를 양대 축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

* 저출생 대책('24.6.19) 151개 과제 + 추가 보완과제 32개

⇒ **9년만에 출산율 반등, 혼인 증가율 역대 최고** 등 저출생 반전 계기 마련

① 인구비상사태 선언 → 3대 핵심분야 중심의 『저출생 대책』 발표(6.19)

① (일·가정 양립) 휴가·휴직 등을 ①필요할 때 유연하게 + ②소득 걱정없이 ③눈치보지 않고 사용 + ④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히 지원

*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(現 월 150만원 → 월 최대 250만원)

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(120만원)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(10→20일) 등

② (양육) 0~11세 유아·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·돌봄 체계 구축

* 유치원·어린이집 이용시간 12시간으로 연장(07:30~19:30), 늘봄학교 소학년 확대(~'26년),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(중위소득의 150 → 200% 이하)

③ (주거) 신혼·출산가구에 대한 ①주택공급 확대, 내집마련을 위한 ②자금지원과 ③청약요건 완화, ④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

*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대폭 확대(연 7만호 → 12만호 +α)

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, 신규 출산가구 특공 재당첨 1회 허용 등

②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통해 보완과제 마련·추진

○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제도 개선, 생활밀착형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 지속 발굴

구분	주요 보완과제
'24. 7월	결혼준비대행업체 직권조사 및 표준약관 마련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 1순위 선정
8월	국·공립 직장 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확대
9월	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부여의무 개선, 일·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
10월	임산부 이동편의 제고, 유사산휴가 제도개선,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
11월	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, 가족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
12월	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,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등
'25. 1월	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, 일반고등학교 다자녀 우선배정 확대 등

③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 결집 추진

① 지자체·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소통·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
- (저고위-지자체 협의체) 중앙-지방이 함께 지역밀착형 저출생 해법 모색
* (개최현황) '24년 2회(5.10일 / 9.11일), '25년 1회(1.10일)
- (지역 순회간담회) 지역 현장의견 청취 및 지역 우수 저출생 대책 공유
* (개최현황) '24년 6회(인천^{5.23일}, 충북^{9.4일}, 강원^{7.24일}, 전남^{12.19일} 등), '25년 1회(울산^{2.20일})
- (지역소멸 대응 포럼) 지자체·지역상의·기업과 함께 지역의 인구·산업 점검
* (개최현황) 인천·경기('24.9.9일), 대전·세종·충청(12.13일), 부산·울산·경남('25.2.28일)
- (경제단체 민관협의체) 저출산 대응 위한 기관별 사업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
* (개최현황) '24년 5회, '25년 1회('25.2.14일)

② 경제계·금융권·방송계·학계·종교계를 아우르는 민간주도 「저출생 극복 추진본부」 출범 →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의 구심점으로 다양한 활동* 전개

* 우수기업 사례집 배포, 지역소멸 대응포럼 개최, 저출생대응 특별방송 주간 운영 등

③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·금융권 등의 자발적인 대응 노력*도 확산

* (신한금융) 중소기업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 출연('24.8)
(HD현대중공업) 협력사 직원 자녀에게 사내 직장어린이집 개방('24.11)

④ 정책대응 + 사회인식 변화 →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

① (결혼·출산 통계) 출생아 수 9년만에 반등, 혼인건수 '20년 이후 최다

* 출생아수(만명): ('19) 30.3 ('20) 27.2 ('21) 26.1 ('22) 24.9 ('23) 23.0 **(^{24P}) 23.8**
혼인건수(만건): ('19) 23.9 ('20) 21.4 ('21) 19.3 ('22) 19.2 ('23) 19.4 **(^{24P}) 22.2**

② (국민인식 변화)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

(단위: %)	사회조사(통계청)	국민인식조사(저고위)
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	('14)56.8 → ('16)51.8 → ('18)48.1 → ('20)51.2 → ('22)50.0 → (²⁴)52.5 * 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	('24.3월)70.9 → (9월)71.5 (+0.6%p)
출산 의향	('18)69.6 → ('20)68.0 → ('22)65.3 → (²⁴)68.4 * 18년 이래 최초 반등	('24.3월)32.6 → (9월)37.7 (+5.1%p)

[참고] 2024년 출생·혼인 통계(잠정) 주요내용

- **(출생)** '24년 연간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3.6% 증가한 **23.8만명**
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.03명 상승한 **0.75명**(‘15년 이후 9년만 반등)

【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】

(만명, 명)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 ^P
출생아수	43.8	40.6	35.8	32.7	30.3	27.2	26.1	24.9	23.0	23.8
증감	+0.3	△3.2	△4.8	△3.1	△2.4	△3.0	△1.2	△1.1	△1.9	+0.8
합계출산율	1.24	1.17	1.05	0.98	0.92	0.84	0.81	0.78	0.72	0.75
증감	+0.03	△0.07	△0.12	△0.08	△0.06	△0.08	△0.03	△0.03	△0.06	+0.03

- ① **(母 연령별 출산율)** 주출산연령대인 30대 출산율이 개선*되고,
 20대 후반 출산율 감소폭도 크게 축소**

* 연령별출산율(명/천명): (20대초) 3.8(-), (20대후) 20.7(△0.7) **(30대초) 70.4(+3.7)**
(30대후) 46.0(+3.0) (40세 이상) 4.0(△0.1)

** 전년대비 20대후반 합계출산율 감소폭(명/천명): ('22) △3.5 ('23) △2.6 ('24) △0.7

- ② **(출산순위별 출생)** 첫째아(14.6만명, +0.8만명) 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
 환경의 평가 지표로 여겨지는 **둘째아 출산**(7.6만명, +0.2만명)도 증가 전환

* 셋째아 이상(1.6만명, △0.1만명)은 소폭 감소

- ③ **(지역별 출산율)** 출산 증가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17개 시·도 중
14개 지역(광주, 충북, 강원 제외)에서 **합계출산율 증가**(‘23년 1개)

- **(혼인)** '24년 혼인건수는 전년대비 14.9% 증가한 **22.2만건**

○ 통계 작성('70년) 이래 **최고 증가율 기록**, 4년만에 20만명대 회복
 ⇒ 향후 지속적인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긍정적 신호

【 연도별 혼인건수 】

(만건, %)	'20	'21	'22	'23	'24 ^P
혼인건수	21.4	19.3	19.2	19.4	22.2
증감률	△10.7%	△9.8%	△0.4%	+1.0%	+14.9%

II. 부처별 주요과제 추진계획

◇ 6.19대책의 **실행력 제고**를 위해 **주요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계획** 및 **중점 추진과제**를 매월 점검 중 (1월: 고용부/인사처 → 3월: 복지부/여가부/법제처)

1. [복지부] 건강한 임신 및 난임 지원 관련 성과목표 달성계획

핵심지표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30년
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(만명)	8	17	20	21	24
난임시술 지원 건수(만건)	18.3	18.9	19.5	20.0	22.0

1 '25년 주요 추진계획

- ① 확대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및 지원 강화
 - (가임력 검사) 지원대상에 미혼남녀 포함, 지원횟수 확대('25.1월~)
 - * ('24년) 임신준비 부부 대상/생애 1회 → ('25년) **모든 20~49세 남녀 대상/최대 3회**
 - (난임시술) 지원횟수 확대(여성 1인당 25회→**아이당 25회**), 본인부담률 인하(45세 미만 30%/45세 이상 50%→**췌연령대 30%**) ('24.11월~)
- ② 국가건강검진시 가임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검사기관 확대*
 - * (기존) 산부인과·비뇨의학과만 가임력 검사 가능 → (개선) 「건강검진기본법」상 검진기관 추가
- ③ 가임력 검사 결과에 따라 난임소견자에 대한 원인진단*, 난임 시술 및 생식세포 동결·보존(영구적 가임력 손실 우려 시) 등 연계 지원 강화
 - * FSH(난포자극호르몬), LH(황체형성호르몬), E2(에스트라디올호르몬) 검사로 난임 원인 진단
- ④ 금년 중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**2개소 추가 설치·운영** 추진
 - * 현재 중앙 1개소 및 권역 9개소 운영 중

2 향후 대응방향

- 가임력 검사 지원의 경우 신청 급증*으로 성과지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, 하반기 중 지원 예산 소진 가능성
 - * '25.2월 누적 신청자 94,146명으로 월평균 신청자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
- ⇒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**가능한 재원확보 방안** 강구

2. [여가부]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성과목표 달성계획

핵심지표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30년
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(일)	33	28	18	10	5

1 '25년 주요 추진계획

- 원활한 돌보미 매칭을 위한 서비스 유형 다각화 + 정부지원 확대
 - ①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·하원 시간대 공급 확충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(복지부)과 연계하여 5,000명 규모로 **등·하원서비스 시범운영**(‘25.5월~)
 - ② 긴급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사전신청 요건을 완화하고, 추가 비용 부담을 낮춘 **‘긴급돌봄 서비스’ 정규화**(‘25.1월)
 - * (기존) 4시간 전 신청+추가요금 4,500원 → (개선) 2시간 전 신청+추가요금 3,000원
 - ③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1만 가구 확대*(11만→12만가구, ‘25.1월),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되는 **다자녀 가구 요건도 완화****(‘25.3월)
 - * (‘24) 중위소득 150% 이하 → (‘25) 중위소득 200% 이하
 - ** (현행) ①12세 이하 자녀 3명 또는 ②36개월 이하 자녀 2명 → (개선) 12세 이하 자녀 2명
-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자체 책임성 강화
 - ① 아이돌보미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**각 지자체**에서 기존 아이돌봄센터 외 **추가 센터를 지정·운영***하도록 적극 장려
 - * 복수 아이돌봄센터 신규 지정시 컨설팅, 일정기간 평가 면제 등(‘25.1월)
 - ② 돌봄수당 인상(4.7% ↑), 업무강도를 고려한 **영아(0~2세) 돌봄수당 신설** (시간당 1,500원) 등 **아이돌보미 처우 개선**(‘25.1월~)
 - ③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실적 지표* 신설 추진(‘25.5월)
 - * 예) 복수의 아이돌봄센터 지정 여부, 아이돌보미 수 증가율 등

2 향후 대응방향

- 돌보미 공급 확대*를 위한 센터 및 지자체 유인방안 추가 마련
 - * 아이돌보미 수(명): (‘22) 26,675 → (‘23) 28,071 → (‘24) 29,635
-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*, 민간 돌봄인력 관리 강화 등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 보완을 위한 민간 돌봄자원 활용체계 구축
 - * 관련 내용을 담은 「아이돌봄지원법」 개정(안) 국회 상임위 통과(‘25.3.6.)

3. [법제처] 결혼·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 추진방안

- (추진 배경) 출산·육아 관련 일부 용어는 결혼·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상황 →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용어 정비 추진

※ (예시) 정비대상 용어 및 대안용어

- ① 육아휴직 (휴직이 '쉬고온다'는 부정적 인식) → 육아몰입기간
 ② 미숙아 (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인식) → 조산아

- (추진 방안) 저고위(총괄), 법제처(법령개정)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 구성 →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

세부 추진절차

추진 단계 (추진기관 · 일정)	추진 내용
① 정비대상 용어 발굴 및 공론화 (저고위, 3월)	▶ (용어 발굴) '미혼모·미혼부' 등 비혼 출산 폄하 용어 외에도 '치매' 등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포함하여 발굴 *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의견조사를 활용하여 대상 용어 추가 발굴 실시 ▶ (의견수렴·공론화) 각계 각층과의 폭넓은 소통* 통해 정비 필요한 용어 지속 발굴하고, 정비 방향에 대한 공론화 추진 * 경제6단체 협의체, 지역순회 간담회, 지역소멸 대응포럼 등
② 정비용어 · 대안 용어 확정 (관계부처, 4~6월)	▶ (전문가 자문) 관계부처 및 국어·법학 전문가 대상 자문 실시 ▶ (대국민 설문조사)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비용어·대안용어 확정
③ 정비안 마련 및 법령 개정 (법제처, 7~9월)	▶ (정비안 마련) 법령 '전수' 조사 거쳐 개정 필요 법령 목록화 + 법제처 검토(법령용어순화팀) 및 부처협의 통해 정비안 마련 * 정비 대상 용어(예시)가 포함된 법령 수: 육아휴직(68개) 등 ▶ (법령 개정) 신속한 정비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우선 개정 + 법률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법률 개정 이후 후속 정비

Ⅲ. 추가 보완과제

◇ 출산율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**다자녀 가구 지원, 주거 지원**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 중심으로 **추가 보완과제** 발굴

① 주거 분야 등 **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+ 출산가구 우대 지원 강화**

① 임대주택 소득기준 개선 국토부

- (현황) ①유사 제도 간 **소득기준이 상이**하고, 일부 제도는 ②**맞벌이 소득기준이 낮거나 부재**하여 혼인이 페널티로 작용할 소지
 - 공공임대 중 중산층 신혼·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‘신혼·신생아Ⅱ 유형’의 경우 매입임대¹⁾에 비해 **전세임대²⁾의 소득기준이 엄격***
 - * 신혼·신생아Ⅰ유형(저소득층 지원), 다자녀가구 유형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소득기준이 동일
 - 공공지원 민간임대³⁾(신혼부부)의 경우 현재 **맞벌이 소득기준 부재**

- 1) (매입임대)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
- 2) (전세임대) LH에서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 전세계약 후 재임대 + 전세금 상당부분 지원
- 3) (공공지원 민간임대) 리츠(주택기금 출자)가 주택 건설 후 주변 시세의 70~95% 수준으로 임대

- (개선) ①**전세임대(신혼·신생아Ⅱ) 소득기준을 매입임대 수준으로 완화**, ②**공공지원 민간임대(신혼부부)에도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**

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(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대비)

		현 행		⇒	개 선	
		외벌이	맞벌이		외벌이	맞벌이
공공임대 (신혼·신생아Ⅱ)	매입임대	130%	200%		130%	200%
	전세임대	100%	120%		130%	200%
공공지원 민간임대(신혼)		120%			120%	200%

※ 참고: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(100%)

1인	2인	3인	4인	5인
3,598,164원	5,477,003원	7,626,973원	8,578,088원	9,031,048원

②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국토부

- (현황)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우선순위 기준*에 따라 선정하며, 동 순위 간 경합 시에는 평가항목별** 배점 합계에 따라 결정

* 예시) (1순위) 신생아가구 (2순위) 유자녀 신혼부부 (3순위) 무자녀 신혼부부 등

** 대상지역 거주기간, 자녀 수, 청약저축 납입회차, 수급자·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

- (개선) 매입임대·전세임대(신혼·신생아Ⅱ 유형)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**자녀 수 배점기준 상향***

* (현행) 자녀1명 1점, 2명 2점, 3명이상 3점 → (개선) 1명 2점, 2명 3점, 3명이상 4점

③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우대 강화 국토부

- (현황) 든든전세주택* 입주자는 **신생아 가구(출산 2년 이내) 여부** 및 **자녀 수**에 따른 배점 순으로 선정하며,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

*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·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,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%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('25년 1.4만호)

- (개선) 출산 시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**신생아 가구 배점 상향(1→2점)**

④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조건 개선 농림부

- (현황)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(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)은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

→ 각각 지원금을 수급하던 청년농업인 간에 결혼 시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발생

* 예) A시와 B시에 각각 거주·사업장이 있던 청년농업인 a와 b가 결혼하여 b가 a의 거주지로 주소를 옮길 경우, b는 더 이상 지원금 수급 불가

- (개선) 기존 수급자가 **결혼**으로 인해 **거주지가 변동**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**지원금 지급 지속**

2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

1 다자녀 가구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 국토부

- (현황) 인천·김포·김해·제주공항에서 유·소아 등 교통약자,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검색 등 우선출국 서비스(패스트트랙) 제공 중
- (개선)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, 자녀 나이 만 19세 미만)도 부모·자녀 동반 시*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

* 부·모 중 1인과 자녀 중 일부만 동반하는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이용 가능

** 인천·김포공항 등은 피크 시간대에 출국 통로가 혼잡한 상태로, 충분한 혼잡대책 수립 병행

공항별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 대상

현 행		⇒	개 선
인천공항	유·소아(만7세 미만) 등 교통약자와 동반객, 사회적기여자 등		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(추가)
기타 공항	유·소아(만24개월 미만) 등 교통약자와 동반객, 사회기여자 등		

2 다자녀 가구 호텔 이용시 편의 제공 확대 문체부

- (현황) 객실 당 숙박인원 제한 등으로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는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
- (개선) ①다자녀 가구가 함께 투숙가능한 객실 운영 확대, ②최대투숙 인원 산정시 영유아인원 제외, ③체크인 패스트트랙 도입, ④상위 등급객실 할인 등 다자녀 가구 투숙에 대한 다양한 편의 제공 유도

* ①, ② : 「관광진흥법」상 호텔업 등급 평가시 가점항목으로 반영(문체부)

③, ④ : 한국호텔업협회에서 회원사에 협조 요청

3 일·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보강

1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기준 합리화 기재부

- (현황)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**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**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 비과세

* 기업의 출산지원금(출생일 후 2년 이내 공통규정에 따라 두 차례까지 지급)은 전액 비과세

- (개선)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**자녀 1인당 월 20만원***으로 조정

* 예)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40만원, 3명인 경우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

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

현 행	개 선
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	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

2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 확대 행안부

- (현황) 기업이나 지자체 어린이집을 인근 기업 근로자 자녀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수요 증가
- (개선) **지방소멸대응기금**을 활용하여 상가 밀집지역, 지하철 인근 등 출퇴근 친화지역에 **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**
- '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**권장사업**으로 **포함**하고, 지자체 수요가 있을 경우, 既수립된 **'25년 투자계획 변경 허용**

4 既 발표 과제 실행력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구체화

①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 후속조치 실시 공정위

- (현황)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계획 발표(2차 인구비상대책회의)
- (개선) '25.4월 부터 가격정보 수집·분석 착수 → 5월 부터 공개
- (4월~) 매월 1회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의 필수 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·분석

가격정보 수집대상 품목

구 분	결혼식장	결혼준비대행서비스
필수품목	대관료(기간별/시간대별), 장식 비용, 식음료 비용	스튜디오 촬영, 드레스, 메이크업
주요 선택품목	추가 장식·연출비, 추가 식음료 비용, 행사(축가, 연주, 사회 등) 비용, 사진·영상 촬영비, 폐백 등	컨셉 추가, 야외·야간 촬영, 앨범 페이지 추가, 혼주 메이크업·헤어, 액세서리 등

- (5월~) 지역별로 단위품목별 평균가격 등 정보를 격월마다 공개*하고, 가격 동향 분석자료도 분기별 제공

*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('참가격') 내 결혼서비스 메뉴 신설·제공

가격정보 제공 예시(결혼식장 대관료)

지역구분	평균가격	25%	50%	75%
서울	1,800만 원	920만 원	1,710만 원	3,000만 원
인천·경기	1,500만 원	700만 원	1,400만 원	1,800만 원

* 지출액이 적은 쪽부터 배열 시 전체의 25%, 50%(중위값), 75%에 해당하는 금액

② 등·하원(교) 아이돌봄서비스 도입·운영 여가부/복지부

- (현황) 등·하원(교) 시간대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, 아이돌보미 부족 등으로 이용에 애로
- (개선) '25.5월 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1시간 단위로 추가 비용없이 이용 가능한 등·하원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

*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40개소, 참여자 5,000명 규모